성주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및 중간지원조직 운영·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제 안 자 : 성주군수

2. 개정이유

○ 성주군 농촌협약의 필수조건인 농촌협약 위원회, 행정협의회 등 위원회 구성 등 농촌협약제도와 신활력플러스사업의 추진근거를 마련하여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 도모

3. 주요내용

가. 농촌협약제도(안 제5장)

1) 협약의 기본내용

2) 협약조건

나.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및 추진위원회 운영(안 제6장)

1) 추진단 구성, 업무

2) 추진단 운영

3) 추진위원회 설치, 구성 및 기능

4) 위탁에 관한 사항

다. 중간지원조직의 기능, 구성 및 운영(안 제3장 제22조)

1) 농촌협약,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

2) 중간지원조직의 구성, 센터의 운영 등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」 제38조 및 같은 법 제39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규제심사 : 해당없음[미래지역활력과-383(2022. 1. 20.)]

라. 성별영향평가 분석 : 해당없음[가족지원과-3331(2022. 1. 19.)]

마. 입법예고 : 의견없음(예고기간 : 2022. 1. 28. ~ 2022. 2. 17.)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 농촌협약제도와 신활력플러스사업 등의 추진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,

○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과 추진위원회의 구성·운영, 농촌협약 및 중간지원조직 구성 등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

○ 법리 검토결과, 관련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 기준에 합당하며,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·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